
2024년 『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지원』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

2024. 3.



목 차

1. 사업신청 자격	1
2. 재창업교육 지원제외 업종	2
3. 재창업교육 FAQ	4
4. 재창업교육기관 교육정보 및 문의처	5

1

소상공인 기준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
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.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2

재창업교육 지원제외 업종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3

재창업교육 FAQ

1 재창업교육이 무엇이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재창업 및 업종전환 의지가 있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교육(10H) 및 업종별 전문교육(40H)을 제공합니다.
- ☞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.

[지원대상 충족요건]

1.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2.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'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
3. 재창업교육 지원제외 업종[참고2]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 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

2 자세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<http://hope.sbiz.or.kr>)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, 재창업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, 업로드된 교육과정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3 재창업교육은 몇 번 참여할 수 있나요?

- ☞ 연 최대 2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단, 같은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.

4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참여 가능한가요?

- ☞ 아닙니다.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본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5 재창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지역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전문교육기관(35개)으로 선정된 기관의 특화업종, 교육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,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 교육참여시간은 얼마나 되나요?

- ☞ 교육과정은 총 50시간이며, e러닝 교육(10시간)과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(40시간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7 교육형태는 어떻게 되나요?

- ☞ 교육형태는 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되며, 교육과정별 세부내용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①현장, ②온라인, ③현장+온라인

8 재창업교육 수강 시 비용이 드나요?

- ☞ 해당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교육으로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4

재창업교육기관 교육정보 및 문의처

구분	교육지역	교육기관명	주요 교육업종	문의처
1	서울	마에스트로예술실용 전문학교	미용	02-2291-0096
2	서울	(주)웹플래너	교육서비스	02-712-7770
3	서울	노노스창업교육학원	전자상거래	02-508-3682
4	서울	몽실꿈터협동조합	공예	02-586-2511
5	서울	(재)서울현대교육재단	음식점업	02-2675-6204
6	서울	(사)대한가맹거래사협회	프랜차이즈 가맹	02-585-7721
7	서울	탑평생교육원	전자상거래	02-2632-2008
8	서울	플로리스트파크 바리스타파크학원	화훼	02-2057-7776
9	부산	올패션디자인학원	의복	051-315-8882
10	부산	문화요리학원	음식점업	051-804-1124
11	부산	쿡스요리학원	음식점업	051-465-2000
12	부산	한솔요리커피 제과제빵학원(부산)	카페/디저트	02-6365-3030
13	대구	(주)세종경영연구소 평생교육원	공예	053-716-0850
14	대구	김정희플라워 건축조경학원	화훼	053-764-6615
15	대구	김종희플라워디자인학원	전자상거래, 화훼	053-422-2660
16	인천	(주)에듀윌	전자상거래	032-263-2900
17	광주	광주제일직업전문학원	음식점업	062-367-7373
18	광주	금성직업전문학교	드론	062-223-4022
19	광주	주)소상공인진흥개발원	방역	062-942-9296

구분	교육지역	교육기관명	주요 교육업종	문의처
20	광주	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	미용	062-674-4911
21	대전	(주)한국평생교육원	교육서비스	042-533-9333
22	대전	그린꽃예술둔산학원	화훼	042-487-2006
23	대전	팬쿠킹아트아카데미학원	음식점업	042-300-5252
24	경기	분당글라시꼬커피 제과제빵교육원	카페/디저트	031-714-0502
25	경기	에스쓰리미용학원	미용	031-252-7418
26	경기	은빛꽃꽃이조경학원	화훼	031-743-4500
27	경기	바른평생교육원	교육서비스	031-824-5036
28	경기	주식회사씨이오	전자상거래	031-907-1126
29	강원	두레공예협동조합	전자상거래	033-744-1644
30	충북	피움플로리스트학원	화훼	070-8615-0016
31	충남	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	전자상거래	031-979-3724
32	전북	사)한국여성소비자연합	교육서비스	063-282-9898
33	경북	여의패션디자인학원	의복	070-4736-8000
34	경남	씨티우먼뷰티아카데미	미용	055-748-1010
35	경남	(주)경남지식인재개발원	교육서비스	055-356-8777